비상경제장관회의
23-9-3
(공개)

「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」 추진계획

2023. 3. 8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기본방향 ····· 2

Ⅲ. 세부 지원사업 ····· 4

1. 임금 : 원·하청의 임금격차 완화 ····· 4

2. 복지 : 원·하청의 복지격차 완화 ····· 5

3. 훈련 : 숙련인력 양성 지원 ····· 7

4. 안전 :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 ····· 8

5. 고용지원 :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 ····· 9

Ⅳ. 제도적 지원방안 ····· 11

Ⅴ. 기대효과 ····· 13

Ⅵ. 추진일정 ····· 14

Ⅰ. 추진배경

□ 친환경 선박 중심의 수주 지속 증가, 그러나 현장은 구인난 심화

○ '21년부터 호황 수준의 수주 지속*, 특히 우수한 기술력으로 고부가·친환경 선박 수주증가 → 향후 5년 이상 추세 계속 전망

* 국내 수주량(만CGT) : ('19) 1,007 → ('20) 827 → ('21) **1,764** → ('22) **1,559**

○ 그러나, 선박건조 현장에서는 저임금·고위험 등으로 청년층 등의 신규인력 유입 매우 저조*, 기존 숙련인력의 이·전직**도 심각

→ 조선업은 고숙련 노동투입이 여전히 중요한 산업으로,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

* **'22.下 미충원율**(%): **(조선)** 34.0 > **(제조)** 28.7 > **(전산업)** 15.4

** **'22년 주요 제조업 이직률**(%): **(조선)** 3.4 > **(뿌리)** 3.0 > **(자동차)** 2.3

□ 이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원하청 격차 심화에 기인,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원하청 스스로 「상생협약*」 체결(2.27일)

○ 특히, 원청의 기성금 인상을 통한 임금·복지 격차 완화가 핵심

* **「상생협약」** 주요내용 : **적정 기성금 지급, 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, 에스크로 결제 제도 활용, 재하도급**(물량팀) **사용 최소화, 체납보험료 납부 지원** 등

○ 그러나, 조선업계의 Heavy Tail* 특성 등으로 원청은 향후 2~3년간 경영난 여전, 큰 폭의 기성금 인상은 어려운 상황

* **수주한 선박**을 발주자에게 **인도**할 때 **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계약방식**
↳ **('21) 선박수주 → ('22) 설계 → ('23~'24) 건조<인력수요↑> → ('25) 인도<대금수령>**

→ 단기적으로 원하청의 임금·복지 등의 격차 계속 불가피

➡ 이에, 향후 2~3년간의 과도기 상황에서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고,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원하청 격차 완화를 지원

○ 아울러,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숙련인력 양성, 안전한 작업장 구축 등을 지원하고, 협력업체 고용지원 등을 패키지로 구성·지원

Ⅱ. 기본방향

1 「상생협약」 과제에 대한 원하청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지원

○ 원청의 기성금 인상 및 하청의 임금인상 등 이행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계속 지원여부 등 결정

○ 「조선업 상생협의체*」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·점검

* 조선 5사 원·하청사, 민간전문가, 고용부·산자부·공정위, 자치단체 등 참여

2 조선업계로의 인력유입-유지-양성을 체계적·종합적 지원하기 위해 「임금-복지-훈련-안전-고용지원」 全영역을 패키지로 구성·지원

○ 예산사업의 경우, 정부지원과 함께 자치단체와 원청도 분담하고, 추후 필요시 「상생협의체」 등을 통해 지원사업 추가 발굴

○ 한편, 패키지 지원사업과 함께,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 및 인력 운용 지원 등을 위한 '제도적 지원방안'도 마련

3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로 하청기업·근로자로, 원활한 인력수급과 동시에, '물량팀'(재하도급)의 자발적 전환* 유도·촉진

* '물량팀' → '사내협력사'로 전환 / 물량팀 소속 '종사자' → 사내협력사 '근로자' 등

※ (참고) 업황변동, 야외작업 돌발변수 등 업계 특성상 **일부 유연작업팀 불가피**, 그러나 **최근** 사내협력사 구인난 심화 등으로 **물량팀 급증**(1만명 내외 추정)

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

	세부 지원사업	지원대상
임금	·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 (신규입직자 + 재직자)	협력업체 근로자
	·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(컨설팅 + 인센티브)	원청·협력업체 노사
복지	·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	협력업체 근로자(7개 기금)
	· 하청근로자 생활환경·근로환경 개선 지원	협력업체 근로자
훈련	·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	원청·협력업체 근로자
	· 채용예정자훈련 확대·우대 (훈련수당 20 → 100만원)	협력업체 채용예정자
	· 장기유급휴가훈련 우대 지원 (훈련비 50% 추가지원)	협력업체 근로자
	· 폴리텍 교육훈련과정 확대	조선업 훈련생
안전	·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 지원	협력업체
	· 안전보건패키지 시범도입 (진단 → 컨설팅 → 재정지원)	협력업체
	·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대 지원	원청·협력업체
	·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 우대 지원	원청
고용지원	·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(월 100만원·최대 12개월)	협력업체
	·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 신설 (월 50만원·최대 6개월)	협력업체·근로자
	·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 (오프라인·온라인)	구인기업·구직자

Ⅲ. 세부 지원사업

1 임금 Part : 원·하청의 임금격차 완화

1 「조선업 희망공제」 확대

❶ '22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을 위해 시범실시한 신규입직자 대상의 1년 만기 총 600만원* 자산형성 공제사업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

* 근로자 150 + 자치단체 150 + 정부 300 ☞ **신규입직자 소득 상승효과(+ 年 450만원)**

- 기존 연령제한(45세) 폐지 통한 지원요건 완화 및 대상지역 확대*
  → '23년 목표인원: **2천명**('22, 1,175명 대비 825명 확대)

* ('22) 울산, 거제, 전남영암·해남 → ('23) **울산, 거제, 전남, 전북군산, 부산 등**

❷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 추진 ('24~'25년 2년간 한시운영)

- 정부뿐 아니라, 근로자·기업(원청)*·자치단체가 비용분담 주체로 참여, 「상생협약」 체결·이행 초기의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 지원

* 재직자 대상 「조선업 희망공제」 사업은 **희망**하는 **기업**에 한해 **운영** 가능

-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·지원을 통해 이·전직 감소 및 구인난 해소 기여 → 근로자 숙련도·생산성 및 산업·기업경쟁력 제고

- 사업종료 이후에는 원청의 기성금 인상으로 임금수준 유지·상향

사업운용(안)

- **(납입주체)** 근로자 · 기업(원청) · 자치단체 · 정부 4자
- **(납입기간)** 2년 만기(24개월, 가입일 기준)
- **(납입액·수령액)** 4자 각 2년간 200만원* 납입, 만기시 총 800만원** 수령
  * (월별 납입액, 예시) 8만원 20개월, 10만원 4개월 ** **재직자 소득 상승효과(+ 年 300만원)**
- **(가입기간)** 사업시행후 3개월(예: '24.1~3월)

2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

❶ 조선업계 스스로의 **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**원·하청**이 공동 참여하는 **컨소시엄형 컨설팅 대폭 확대***

* 컨소시엄형 컨설팅(임금체계 개편 포함): ('22년) 77건 → ('23년) 260건

- 사업장내 **갈등해소** 위해 **노사파트너십** 및 **상생교육** 등 **연계 지원**

❷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**각종 정부 지원금 우선 선정** 등 **인센티브*** 지원

* (예시) 불이익 근로자 임금감소 지원 등

- 지원대상·기준 등 **구체적 지원방안**은 **「상생임금위원회*」**('23.2~) 에서 **별도 마련·발표('23.4월)**

* 기재부·산업부·공정위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참여(위원장: 고용부장관·이재열교수)

2 복지 Part : 원·하청의 복지격차 완화

1 「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」 확대

○ **하청 근로자**의 **복지증진**을 위해 **원·하청**과 **자치단체**가 **출연**하고, **정부**가 **매칭지원**하는 「**공동근로복지기금***」의 **규모 확대** 추진

* 조선업계는 주요 5개사 중심의 **총 7개 복지기금 운영** 중

↳ 복지사업(예시) 학자금, 주택대부금, 종합검진, 경조사, 명절선물 등

- **'23~'25년 3년간** **원청**의 **출연금**에 대한 **정부**의 **매칭지원 한도**를 **상향**하고, **자치단체 출연금**에 대한 **매칭지원 기간**을 **연장**

【조선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방안】

구분	현행		확대
원청 출연	**매년 최대 10억원 매칭지원**	➔	**'23~25년간 최대 20억원 매칭지원**(이후 최대 10억원)
자치단체 출연	**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칭지원**(매년 최대 6억원)		**설립일 무관, '23~25년간 계속 매칭지원** (매년 최대 6억원)

○ 이를 통해 조선업 기금 규모가 3년간 매년 170억원* 추가 확대 가능

- 기금 규모가 '22년(총 193억원) 대비 **2배 가까이 증가**함에 따라, 그만큼 **사내협력사 근로자 대상**의 **복지사업 확대** 전망

* 현재 출연 중인 **원청**(7개사)에서 **각 10억원**, **자치단체**(5개소)에서 **각 3억원** 추가 출연 가정시, **출연금 85억원**(원청+자치단체) **+ 정부 지원금 85억원**(매칭) = 170억원

【 조선업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현황('22년 기준)】

구분		A사	B사	C사	D사	E사	F사	G사
출연	협력사	10	-	0.2	4.3	9.5	10	-
	원청	10	1.5	3.5	10	10	10	10
	자치단체	0.8	0.1	-	6	6	0.8	-
	소계	20.8	1.6	3.7	20.3	25.5	20.8	10
정부지원		**20.8**	**1.6**	**3.1**	**17.2**	**21.7**	**17.7**	**8.5**
합계		**41.6**	**3.2**	**6.8**	**37.5**	**47.2**	**38.5**	**18.5**

2 하청근로자의 생활환경·근로환경 개선 지원

○ 기숙사·개별세대 **임차료, 교통비** 지원, **공동세탁소** 운영 등 생활환경 개선 및 **휴게실·샤워실·화장실**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

○ 「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*」 활용, **정부-자치단체 협업** 통해 지원

* **매년 자치단체 대상 사업공모를 통해 적합사업 선정·지원**

지원 사례

- **(예시 1)** 거제시는 지역내 **사내·외 협력사**를 위해 샤워장 개보수, 작업장 내 간이 화장실 및 직원 휴게공간 조성공사 등 **근무환경 개선 지원**
- **(예시 2)** 전남영암군은 **원거리 통근 협력업체 직원**을 위해 공용 버스 임차 지원
- **(예시 3)** 울산동구는 타지역 거주 근로자 대상 기숙사 등의 임차비용 지원

3 훈련 Part : 숙련인력 양성 지원

1 「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」 확충

○ 현재 현대중공업, 삼성중공업 등 **총 4개소 운영·지원** 중

- **재직자·구직자**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 등에 따른 **저탄소·친환경 선박발주 증가** 등에 **대응**한 **맞춤형 직무훈련** 실시제

- 장비비 등 1년차 15억, 2~5년차 7.5억씩 **5년간 총 45억원** 지원

○ 추후 조선업계의 산업전환 특화훈련 **수요증가**에 맞춰 「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」 **추가 선정** 추진('23.上)

2 「채용예정자훈련」 확대·우대 지원

○ **원청 기술연수원**을 '**공동훈련센터**'(총 12개소)로 활용, **협력업체**의 **채용예정자 · 취업희망자** 대상 조선업 **현장 맞춤형 훈련 확대**

- 조선업계로의 **훈련생 참여촉진** 위해 **훈련수당 우대**(20 → 100만원) → '23년 목표인원: **1.5천명**('22, 1.2천명 대비 300명 확대)

3 「장기유급휴가훈련*」 우대 지원

○ **협력업체**에는 **우수한 훈련프로그램 제공** 등을 위해 **훈련비 50% 추가 지원** (특별고용지원업종·고용위기지역 사업장과 동일)

* 근로자에게 **20일 이상**의 **유급휴가**를 주고, **최소 4주 이상 훈련**할 경우, **훈련비** (NCS 기준단가 100%) 및 **인건비**(최저임금 150% 범위) 지원

4 「폴리텍」 교육훈련과정 확대

○ 조선소 주변 **폴리텍 캠퍼스**를 활용, **수준별 인력양성 실시** 중

* 동부산, 창원, 포항, 전남, 남인천, 진주, 강릉 등 **7개 캠퍼스**(**연 350명 내외**)

○ 기업 수요를 받아서 **교육훈련과정('비학위') 추가 확대** 추진

*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등 협의 통해 **'23년 하반기 과정**(2~3개월) 개설 추진

4 안전 Part : 안전한 작업장 구축 지원

1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 지원

○ 상시근로자 **50인 미만 사업장** 및 **중기법상 소기업***에 스마트안전장비 구입,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등 **재정지원 중**

* 평균매출액 120억원(제조업 등) ~ 10억원(음식점업 등) 이하 기업, 조선업은 80억원

○ **협약체결 기업**의 **협력사**(사내·외)의 경우, **지원대상**을 **확대**하여 50인 이상 중소기업(평균매출액 1천억원 이하)에게도 재정지원

구분	지원내용	지원액
스마트안전장비 발굴·보급	▪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 지원	최대 3천만원
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	▪ 충돌, 추락, 끼임, 화재·폭발, 질식, 직업병 예방 등 재해예방 품목(제조업 등) ▪ 시스템비계(임대비용) 및 추락방지망 등 (건설현장 한정)	최대 3천만원
안전투자혁신 사업	▪ 위험기계 교체, 위험공정 개선	최대 7천만원~1억원

2 「안전보건패키지」 시범도입

○ **협약체결 기업**의 **협력사**(사내·외)에는 기존 컨설팅사업을 확장, 위험성평가* 중심의 진단 → 컨설팅 → 재정지원으로 **패키지** 지원

* **노사**가 함께 **산업안전 check list**를 참고하여 **현장 위험도**를 **자율적**으로 **평가**하고. 그 결과를 토대로 **안전시설·장비 확충, 예방교육** 등 실시

3 「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」 우대 지원

○ **원·하청**이 함께 **「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」** 참여시 우대 선정

- 참여 컨소시엄에는 **기술지도** 및 **상생협력활동** 소요비용* 등 지원

* 위험성평가 기법전수, 안전교육, 캠페인 등 **정부·원청**이 **각 50% 매칭 지원**

- **원하청** 컨소시엄 주도의 **자발적 산재예방 활동·조치**를 **활성화**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대상 미포함* 등의 혜택 제공

* 단, 중대재해 발생시 감독 실시(사후감독, 특별감독) 실시

4 「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」 우대

○ 조선사 원청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(사내협력사 포함)을 점검하는 「조선업 안전보건 수준 평가제*」 도입·운영 중('11~)

* 사업주에게 **안전보건이행계획서**를 작성·제출하게 하고 내용의 **적정성**을 검토, 이후 계획서 **이행상태 확인** 및 **안전보건 수준**을 **평가**하여 등급별 **차등관리**

○ 협약체결 원청에게는 협약 이행과정에서의 부담·양보 등을 감안, 금년도 평가항목*(총 6개) 중 도급 관련 분야(2개) 면제**

* ①안전보건관리체제 및 현장작동성, ②유해·위험성평가, ③안전보건교육, **④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, ⑤도급 체계**, ⑥안전보건투자 등 6개 항목

** 단, 사망사고 등 **중대재해 발생시 면제 취소**

5 고용지원 Part : 협력업체 채용 활성화 지원

1 「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」 신설

○ 협력업체에서 만 35~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, 임금을 최저임금 120%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,

-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(최대 1,200만원)

☞ 협력업체 채용지원 + 근로자 임금상승 동시 효과

* (참고) **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**: 6개월 이상 실업 등 **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**, **최저임금 100% 이상**, **월 60만원·최대 12개월**, 2년 근속시 **480만원 추가** 지급(최대 1,200만원)

2 「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금」 신설

○ 선박건조 현장에서의 숙련기술전수 및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생산직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지원(협력사간 이동 가능)

- 협력업체에게 채용장려금 및 근로자에게 숙련기술전수수당 지급 (기업·근로자에게 각 월 50만원 · 6개월, 중복·반복수급 불가)

* (참고) **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**: 정년이후 **당해사업장**에서 계속고용시 **분기 30만원·최대 2년**

3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

□ 오프라인

○ **조선업 밀집지역 특화지원**

- 울산 등 밀집지역 고용센터(6개소)에 「신속취업지원 TF*」 운영('22.8~)

* 울산, 통영, 부산, 부산북부, 목포, 군산고용센터 **총 6개소**
↳ **전담자**를 **지정**하여 **조선업 채용지원 서비스 신속·밀착** 지원

-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매칭 지원*을 위해 「조선업 도약센터(舊 희망센터)」 확대 운영('22년 3 → '23년 4개소**)

* (예시) 협력사 신규입직자 대상의 **취업정착금** 지원(3개월 이상 근속, 100만원)
** ('22) 거제, 울산, 군산 → ('23) **목포 추가**

○ **(초)광역단위 지원**

- 광역단위 인력풀 관리, 신속 양성체계 구축 등 산업별 구인난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「조선업 취업지원허브*」 구축('23.下)

*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조선업 구인구직 지원을 위한 **초광역단위 민관협력체계**

□ 온라인

○ 워크넷(work-net)에 조선업 일자리정보 제공 및 채용대행서비스, 온라인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하는 「온라인 지원관*」 신설('23.下)

* 조선기업 검색·관리, 구인·기업지원 현황, 조선업종 미충원률·구인배율 등 제공

○ 조선협회(조선해양ISC)를 통해 지역별·직무별 구인-구직정보를 제공하는 「조선업 일자리매칭 플랫폼」 활성화*('22년 旣구축)

* 주요 조선사 사내협력사 대상 **설명회 개최**,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**구직자 DB 확보** 등

Ⅳ. 제도적 지원방안

1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 6개월 추가 연장

□ 현황

○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해 '23.1~6월분 고용·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 旣 시행*(유예기간: 6개월간)

* '22.12.19, 「'23년 조선업 구인난 지원방안」에 포함·발표

□ 지원방안

○ 납부유예의 대상이 되는 월별 보험료를 6개월 추가 연장('23.7~12월)

- 결과적으로, '23년 전체기간(1~12월)에 대한 보험료 납부유예 可, 「조선업 특별업종」 종료('22.12.31)에도 납부유예 1년 연장 효과

2 성실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한 정부지원 제한 해제

□ 현황

○ 현행 법*상 고용·산재보험료 체납사업장은 고용안정·직업훈련 등 고용보험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

* **고용보험법**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0조(**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**)

** 그간 **특별업종·위기지역** 지정으로 **체납처분 유예 → 체납사업장**임에도 **사업영위 가능**

□ 지원방안

○ 조선업 체납사업장 중 체납보험료 분납계획(최대 36개월) 마련 및 성실 이행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 한시 허용**

* '23.上,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개정(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의 특례) 추진

3 조선업 외국인력(E-9) 활용 확대방안 추진

□ 현황

○ **'22년 기준,** 조선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(E-9) 입국인원은 **2,667명**이며, **올해**는 도입규모 확대*, 조선업 우선 배정 등으로 5천명 내외 예상

*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(E-9) 도입규모('22년 6.9만명 → **'23년 11만명**)

- 다만, 조선업에 대한 외국인력 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, **'제조업' 쿼터 내**에서 **배정**(조선업 사업장 대상 가점부여 중)

○ 한편, **현장**에서는 **협력업체 고용인력**의 他 업종(그외 제조업 등) 으로의 이동 등으로 인한 **인력운용상 애로 호소**

【 '23년 외국인력(E-9) 도입인원 배정 현황 】

(단위: 명

구 분	총 계	제조업	농축산업	어업	건설업	서비스업	탄력배정
'23	**110,000**	**75,000**	**14,000**	**7,000**	**3,000**	**1,000**	**10,000**
('22년 대비 증감)	(+41,000)	(+23,153)	(+4,570)	(+2,190)	(+1,187)	(+900)	(+9,000)

□ 개선방향

❶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을 위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 신설 (5천명+a, 2년 한시) 및 직업훈련 강화*('23.上 외국인력정책위 상정)

* 입국 초기 E-9 인력 대상 **컨소시엄 직업훈련(원·하청사 협업, 3~4주)** 등 강화('23.上)

❷ **동일 사업장**에서 **일정기간 이상 근무**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해 체류기간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* 신설**

* **출국 후 재입국의 과정 없이**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**체류기간 우대 (조선업 분야 직업훈련**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는 **특례요건 완화)**

** **'23.上, 「외국인고용법」** 개정안 **국회 제출** 추진

Ⅴ. 기대효과

1 「패키지 지원사업」은 조선업계가 스스로 마련·체결한 「상생협약」의 성실 이행을 전제로 지원*하는 것으로, 이를 촉진·유도하는 역할

* '상생협의체'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, 그 결과를 지원내용·규모 등에 반영

○ 조선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한 「상생협약」의 이행을 통해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중장기 발전 토대 마련

➔ 他 산업의 상생협력 모범사례 창출 여건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산방안 검토

2 「상생협약」 체결·이행 초기의 과도기 상황(단계적 기성금 인상)에서, 한시적 지원사업을 통해 원하청의 임금·복지 격차를 완화*

* '25년까지 하청근로자의 실질임금 약 10% 인상 효과, 공동근로복지기금 약 2배 증가 등

○ 이를 통해 협력업체로의 신규 인력유입 및 이전직 감소 등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

3 인력양성 확대(훈련), 협력업체 고용지원, 안전기반 구축 등을 통해 조선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

○ 지역 고용·경제 활성화와 함께, 국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, 원청과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 조성

4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연장,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해제 등을 통해 긴 불황기를 견뎌낸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,

○ 외국인력(E-9)의 실효적 활용 확대를 통해 인력운용에서의 애로 경감

Ⅵ. 추진일정

□ **('23.3월~)「조선업 희망공제」**(신규입직자 대상), **채용예정자훈련, 안전보건패키지** 시범도입, **보험료 납부유예조치** 연장 등 실시

□ **(2분기)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** 지원(상생임금위 발표), **체납사업장 지원 제한 해제**(고보법 시행규칙 개정), **외국인력**(E-9) **전용쿼터** 신설 등 추진

□ **(하반기)「공동근로복지기금」** 확대(고시 개정), **폴리텍 교육훈련과정** 확대, **조선업 취업지원허브** 구축·운영 등 추진

구분	지원내용		시기	비고
임금	▸ 조선업 희망공제 확대	신규입직자 대상	'23.1분기	-
		재직자 대상	'24.1분기	
	▸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		'23.2분기	상생임금위 발표
복지	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		'23.3분기	고시 개정 기금지원심사위
	▸ 하청근로자 생활·근로 환경 개선 지원		'23.1분기	-
훈련	▸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		'23.1분기	추가 공고
	▸ 채용예정자훈련 확대·우대		'23.1분기	-
	▸ 장기유급휴가훈련 우대 지원		'23.1분기	
	▸ 폴리텍 교육훈련과정 확대		'23.4분기	-
안전	▸ 스마트안전장비 및 산재예방 시설개선 특별지원		'23.2분기	고시 개정
	▸ 안전보건패키지 시범도입		'23.1분기	-
	▸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대 지원		'23.1분기	-
	▸ 조선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우대 지원		'23.2분기	-
고용지원	▸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		'23.1분기	-
	▸ 숙련퇴직자 재취업지원 신설		'23.1분기	-
	▸ 조선업 일자리매칭 지원 강화	조선업 도약센터	'23.1분기	-
		취업지원허브	'23.4분기	
제도	▸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유예조치 6개월 추가 연장		'23.1분기	-
	▸ 성실분납 체납사업장 정부지원 제한 해제		'23.2분기	고보법 시행규칙 개정
	▸ 조선업 외국인력(E-9) 활용 확대방안 추진	조선업 전용 쿼터	'23.2분기	외국인력 정책위 상정
		장기근속 특례	'23.2분기	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국회제출